

예산총칙

제 1 조 201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총 계	4,228,301,463	126,849,042
일반회계	3,708,345,670	111,250,370
특별회계	519,955,793	15,598,672
공기업특별회계(지역개발기금)	272,117,156	8,163,514
기타특별회계	247,838,637	7,435,158
· 강원도립대학운영	9,807,232	294,216
· 의료급여기금운영	223,232,000	6,696,960
· 학교용지부담금	14,799,405	443,982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(명시이월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,035,394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1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- (1) 공무원 총액인건비
- (2) 차입금 원리금상환
- (3)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배상금, 법정전출금
- (4) 재해대책 및 복구비